

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
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임헌호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10. 23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
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26호로 2023년 10월 10일 임헌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
발의되어 2023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공동 구매·판매, 물류, R&D, 수출 등
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
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경제 모델임. 그동안 중소
기업협동조합 육성·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이뤄져왔고,
지방조합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시책 참여가 쉽지 않아 공동사업
추진 등 조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. 본 조례안을 통해 중소기업
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다수의 지역사회의
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이익이 공유되는 효과가 기대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
다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라.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원 및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7조~제8조)

마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
바. 홍보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23. 10. 12. ~ 10. 16.)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정의)는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“중소기업협동조합”에 대해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로 규정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,
- 안 제5조(협력지원)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 내 다른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안 제7조(경영지원 등) 및 안 제8조(사업 지원 등)는 구청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및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10조(홍보)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 장려를 위해 홍보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뜻함.
-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규모화·조직화와 함께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등의 협업이 필요한 실정임.
- 따라서 본 안건은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의 일부개정(개정. 2019. 12.10.)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, 사업 조합, 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데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¹⁾ (뒷장 계속→)

1) 참고로,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.
(노원구, 마포구, 금천구, 구로구, 용산구, 강동구, 강서구, 동대문구)

- 다만,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가 102,681개²⁾ 인데 반해, 이 중에서 594개의 중소기업만이 2023년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,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 시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2) 2021년 기준임(출처: 「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」 2023. 8. 중소벤처기업부.)

참 고 자 료

1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제3조(종류 등)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협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
2. 사업협동조합(이하 “사업조합”이라 한다)
3. 협동조합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
4. 중소기업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

②조합,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5조(보조금) ①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.

②시·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③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,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, 검사 사업,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10.>